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41
----------	-------

발의연월일 : 2017. 12. 6.

발의자 : 이만희 · 권석창 · 민경욱
송석준 · 송희경 · 엄용수
전희경 · 이완영 · 이양수
장석춘 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이에 농수산물의 생산 · 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 · 가공시설등 조사 · 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74조제5항 신설).
- 나. 생산·가공업자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6항 신설).
-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조사·점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6조제2항 후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된 생산·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 또는 말소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조사·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등록된 생산·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4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p> <p><u><신 설></u></p>	<p>제74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p> <p>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된 생산·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 또는 말소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p>
<p>제76조(조사·점검) ① (생 략)</p> <p>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p>	<p>제76조(조사·점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u>이 경우 그 조사·점검의 주기</u>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③ ~ ⑦ (생략)</p>	<p>----- -----. <u>이 경우 그 조사·점검의 주기</u>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u> <u>등록된 생산·가공업자등이</u> <u>「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u> <u>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u> <u>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u> <u>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u> <u>용을 통하여 휴업 또는 폐업</u> <u>여부를 확인하여 조사·점검</u> <u>대상에서 제외한다.</u></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	---